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4 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윤종오·전종덕·민형배

강득구 · 김준혁 · 황운하

박수현 · 정혜경 · 한창민

복기왕 · 김동아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 으로 이전함. 그런데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 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됨.

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,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,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 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).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	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	2		
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			
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			
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			
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			
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			
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		
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			
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6.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		
	된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		
	에 대한 지방세 감면		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		